

[별표 2] <개정 1999.6.21>

정근수당 감액지급 구분표

구 분	감봉처분을 받은 경우	휴직처분을 받은 경우	
		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	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
감액할 금액	감봉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/18 해당금액	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/12 해당금액	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/30 해당금액